

농림부, 농식품소비촉진 홍보대사로 영화배우 이하나씨 위촉



왼쪽부터 영화배우 이하나씨, 임상규 농림부 장관

“영화 식객에 출연한 영화 배우 이하나(26)씨가 우리 농식품 홍보와 소비촉진에 앞장설 「농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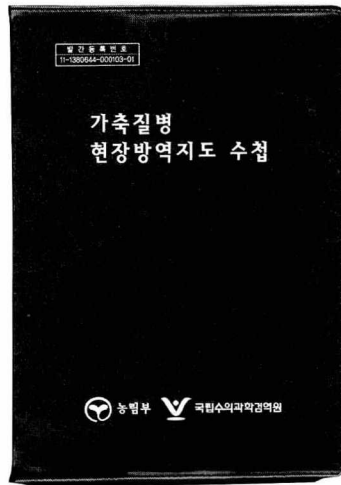
품소비촉진 홍보대사」에 위촉되었다.

농림부는 10월 24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임상규 장관을 비롯해 농림부 직원과 농림관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영화 식객 시사회를 개최하면서, 영화배우 이하나씨에게 「농식품소비촉진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농림부 임상규 장관은 이하나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농식품 소비촉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한 “가축질병 현장 방역지도 수첩” 제작·보급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일선 방역관 등의



현장 대응능력 배양과 양축농가 지도를 위한 “가축질병 현장방역지도 수첩” 1,8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본 방역지도 수첩은 일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가축질병별로 의

사환측 발견 시 현장에서의 긴급 조치 사항과 주요 가축전염병 질병감별진단요령 및 가축사육 농가 방역준수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요 가축질병 발생 시 현장에서의 행동지침을 질병별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질병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 칼라사진을 첨부하여 현장적용 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국가 재난형 질병 발생시 임상 수의사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 수첩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 강문일 검역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본 수첩을 숙지하여 질병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방역으로 질병 전파를 막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KBS 9시 뉴스
수입산 와인 발암물질 '심각' 보도 관련
설명자료 발표

KBS 9시 뉴스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와인 대부분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는 '에틸카바메이트'가 다량 검출되었으며 그 수치는 미국 FDA 권고기준을 최고 26배까지 초과하는 양이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에틸카바메이트는 다량 섭취했을 때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뿐 아니라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수입산 와인을 반잔만 마셔도 하루 허용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산 와인 발암물질」에 대한 이 같은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비롯, 에틸카바메이트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 관련내용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4년도부터 '07년도 현재까지 주류 등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용역연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주류 등의 섭취에 의한 에틸카바메이트의 인체 노출량 등을 고려할 때 위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 에틸카바메이트는 주류 등의 숙성 또는 저장 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인 우레아와 에탄올이 반응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주류 등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2A)로 분류

- 에틸카바메이트의 관리동향은 WHO, Codex, EU 및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준·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캐나다에서만 과실주 0.4mg/kg(400ppb), 테이블와인 0.03mg/kg, 디저트와인 0.1mg/kg, 청주 0.2mg/kg, 위스키 0.15mg/kg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 미국의 경우 특정 주류에 국한하여 위스키 협회 및 와인협회에서 각각 제한적으로 자율적인 저감화 수준을 위스키 0.125mg/kg, 테이블와인 0.015mg/kg, 디저트와인 0.06mg/kg로 각각 정하여 추진
-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류 등의 에틸카바메이트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 식품중 에틸카바메이트의 분포측정 및 위해평가('04년도)
 - 가공식품 중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05년도)
 - 수입주류의 에틸카바메이트 함량분석을 통한 허용기준치 자료를 DB화한 바 있으며('06년도)
 - '07년도에는 섭취량이 많은 다소비 주류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를 진행중에 있음
- 아울러, 07년 1월 국세청과 함께 주류에 대한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실주의 경우 2004년도 0.00348~0.6899mg/kg, 2006년도 불검출~0.549mg/kg수준이 2007년도에는 불검출~0.268mg/kg 수준으로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 에틸카바메이트 생성 저감화 방안
 - 적은 양의 요소(Urea)를 생산하는 효모 사용 권장
 - 숙성 및 저장 · 보관시 가급적 온도를 낮추는 등의 제조방법 개선
 - 포도 재배시 질소(요소)비료 사용 최소화 등
- 앞으로 우리청은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는 차원에서 국세청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간의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등 연구결과와 '06.10월부터 모니터링과 위해평가를 착수하고 있는 EU 및 WHO, CODEX 등 국제기구 등의 관리동향을 주시하여 기준·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 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 정부 포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아 지난 10월 11일(목)

오후 2시 기획예산처 대강당에서 정부포상(기획예산처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최상호 본부장은 “지난해 혁신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경영혁신 로드맵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신구호를 통한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과 고객감동경영 우선실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었다.”며, “앞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함께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방역본부의 정부포상은 기획예산처가 2006년 공공기관 혁신평가 결과, 혁신수준이 2005년도에 비해 3단계가 급상승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역본부는 금년에도 혁신수준을 끌어 올려 궁극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축산농가 방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완비하는 등 고객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방역선도농가를 육성하여 농가 자율방역의식을 적극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하반기
시·도 합동단속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월 8~11일(4일간) 각도 농약비료단속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전국 40개 시·군, 287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 교차합동단속을 하여 부정농약 16건, 부정비료 19건 등 총 3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 조치하였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농약은 약효보증기간경

과 농약 3,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13건이었으며, 비료는 무등록비료 1, 보증표시위반비료 5, 유통기간 경과 또는 미표시 비료 10,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3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전체 적발건수는 농약은 무등록농약 2건, 라벨 위·변조 농약 1,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4,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33, 판매업등록기준 위반 4건이었으며, 비료는 무등록비료 3,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2, 보증표시위반비료 9, 유통기간 경과 토양 미생물 제제 또는 미표시 비료 24,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19건으로 부정농약 74건, 부정비료 57건 등 총 131건이 적발조치되었다.

적발빈도가 많은 유형은 농약은 약효보증이 지난 농약을 제때 반품하지 않거나 재고정리를 잘못하여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고독성 농약 또는 파라쿼트 등 특별 취급관리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일반농약과 같이 진열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비료의 경우 토양미생물 제제는 보증미생물의 속·종명, 균수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도 하여금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각 시·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이상 교차 합동단속을 하는 등 유통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베렐린도포제와 아바멕틴 등 중국산 밀수농약이

유통된다는 제보가 있어 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철저한 추적단속으로 이들 불법 밀수업자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산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는 유해성분 등 안전성 검증이 안 되어 농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또한 작물이 고사하거나 기형과 생산 등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사용 농업인의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소수의 단속공무원만으로는 전국의 불법농자재유통단속에 한계가 있어 민간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불량원료 사용 퇴비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밀수농약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을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신고에 의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관세청과 공조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농약·비료검사 공무원을 통합 중앙단속반을 보강하는 한편 농약 관리법령 등을 개정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무등록, 밀수입 및 친환경농자재를 사칭한 불법판매 행위와 비료에 유해성분을 혼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문의]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이천로 031-299-2595